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장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모와 합장〉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61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제출자 : 조승래의원 등 11인
2. 제출일 : 2024. 9. 6.
3. 회부일 : 2024.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안장 대상자의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사망한 군인의 부모 합장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장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안장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 부모를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 생부 또는 생모 외에, 안장된 사람을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모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안장심의위원회가 안장된 사람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으로 결정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간주함.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 ④ (생략) <u><신설></u>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제3항에 따른 배우자가 없을 경우 안장된 사람의 부모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부모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부</u>

<신 설>

⑤ · ⑥ (생 략)

⑦ 제5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모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합장과 관련하여, 생부 또는 생모 외에 안장된 사람을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안장된 사람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⑦ · 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⑨ 제7항제1호-----

-----.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2. (생 략)

<신 설>

3.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
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3의2. 제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의3. ~ 6. (생 략)

② ~ ⑥ (생 략)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
(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
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
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
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
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생 략)

나. 제5조제5항제1호 · 제3호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부모
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 제5조제7항제5호-----

3의2. 제5조제9항-----

3의3.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5조제7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에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u>제5조제5항제5호</u> 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3. ----- ----- ----- -제5조제7항제5호----- ----- -----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u>제5조제5항제1호</u> ·제3호·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 ----- ----- -----제5조제7항제1호-----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묘의 면적 등) ①·② (생 략)	제12조(묘의 면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5조제3항</u> 및 <u>제4항</u> 에 따라 <u>배우자</u> 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	③ <u>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u> ----- ----- <u>배우자 또는 부모</u>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
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③ (생략)

제14조의2(자연장지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연장지에 장사하고, 그 배우
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장사한다.

③ (생략)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배우자
또는 부모-----

-----배우자 또는 부모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자연장지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배우자
또는 부모-----

-----배우자 또는 부모-----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① -----

· 해군 · 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군복무에 관한 자료, 병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5항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제외에 관한 사무 2.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심사 2.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조사 ③ · ④ (생략)	----- ----- ----- ----- ----- ----- -----. 1. 제5조제7항----- ----- 2. (현행과 같음) ② ----- ----- ----- ----- -----. 1. 제5조제7항제2호----- ----- ----- 2. 제5조제7항제5호----- ----- ----- ③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모 합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4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헌신한 사람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제1조)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를 규정(제5조제1항)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고 있으며,¹⁾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합장을 허용(제5조제3항)하고 있음.

○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합장을 허용하는 취지는 안장 대상자의 평생의 동반자였던 배우자를 예우하고, 생존한 배우자가 사후(死後) 안장 대상자와 함께 안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 ⑦ (생략)

는 것으로 이해됨.

□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배우자가 없을 경우 그 부모를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부모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게 하며,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배우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합장을 허용한 취지와 같이 안장 대상자의 부모가 향후 자식과 함께 안장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하여 최소한이나마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갖고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안장 대상자의 부모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예우의 가장 우선되는 수단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재 봉안당(담)의 내부 안치단은 부부단(유골함 2개)과 개인단(유골함 1개)으로 구분되는데, 개정안과 같이 부모도 합장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유골함이 3개인 (가칭)부자단이 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유골함이 1~2개 더 들어가게 되어 같은 면적의 봉안당(담)을 설치하더라도 더 적은 안장수요만 소화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국립묘지의 수용능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립묘지 안장여력>

(‘24.6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안장능력	안장기수	잔여기수
현충원	257,715	191,577	66,138
호국원	184,441	172,594	11,847
민주묘지	3,220	1,586	1,634
신암선열공원	52	52	0
계	445,428	365,809	79,619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기 안장자 51.2만명 및 생존 안장대상자 34.7만명에 대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추정하면 부모합장 수요는 21.1만기이며,²⁾ 이에 따른 합장비용은 204억 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³⁾

□ 참고로, 미국을 제외한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합장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합장을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안장 대상자의 부모합장을 허용하고 있음.

<미국의 부모합장 현황>

구분	부모합장	대상	조건
알링턴 국립묘지	가능	제대군인의 부모	· 안장자가 미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부양한 경우(영구 부양 성인 자녀)
보훈부 소관 국립묘지	가능	순직 · 상이군인의 부모	· 부모 사망 당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거나 안장자격이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가능

자료: 국가보훈부

2) 핵심연령층(30~54세) 내 미혼 인구 비중 24.6%(출처: 한국은행 ‘미혼 인구 증가와 노동 공급 장기추세’ 보고서, 2024)

3)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 안장대상자는 중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수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향후 사망자 중 미혼인 대상자의 수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을 근거로 미침부 사유서를 제출함. 단, 유골 합장, 위패 안치 등의 비용은 92,989원(유골함 43,943원, 명패 49,046원)이라고 밝힘.

□ 개정안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부모(2인)를 합장할 경우 국립묘지에 국립묘지법상 안장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안장대상자보다 더 많이 안장하게 되어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헌신한 사람을 기리고 선양하고자 하는 국립묘지의 조성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

□ 부모의 범위-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③ (생략)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 ⑧ (생략)

□ 안장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부모 합장 수요

- (봉안묘 안장수요) 199,722기(=봉안묘 안장능력)
- (봉안당 안장수요) 660,019기(=기 안장자+생존안장대상자+-봉안묘 안장수요)
- (미혼인구 비중) 핵심연령층(30~54세) 내 미혼인구 비중 24.6%*
 - * 출처: 한국은행 '미혼 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보고서
- (부모 합장 수요) 211,496기

□ 소요 예산(추정)

- (봉안묘 안장예산) $199,722\text{기} \times 24.6\% \times 108,050\text{원}^* = 5,309\text{백만원}$
 - * 묘역용 유골함 19,320원*2개, 비석 추가각자 비용 69,410원
- (봉안당 안장예산) $660,019\text{명} \times 24.6\% \times 92,989\text{원}^* = 15,098\text{백만원}$
 - * 봉안당용 유골함 43,943원, 명패 49,046원
- (소요 예산) $5,309\text{백만원} + 15,098\text{백만원} = 20,407\text{백만원}$

1. 국립현충원 안장대상

- 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5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사.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傷)을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카.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 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과.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2.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안장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3.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원 안장대상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1. 정의

한 개의 봉분 속에 하나 이상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

2. 내용

단독장(單獨葬)과 대조되는 말이다. 다른 말로 부장(附葬) 또는 합폄이라고도 부른다. 단독장은 한 개의 봉분 속에 한 시신만을 매장하는 것이며, 합장은 한 개의 봉분 속에 하나 이상의 시신을 한 묘혈(墓穴)에 나란히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합장이라고 하더라도 한 묘혈에 나란히 매장하지 않고 그 묘혈의 풍수지리적 해석에 따라 묘혈을 달리하며,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매장하기도 한다. 이럴 때에는 봉분을 두 개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무덤은 그 형태에 따라 단분(單墳)과 쌍분(雙墳)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쌍분이라도 단분이 두 개 나란히 있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두 개의 단분을 반반씩 포개어 쓰는 형태를 말하기도 한다.

쌍분은 분명히 합장인 것을 알 수 있지만, 단분일 때는 단독장과 합장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구분은 분묘 앞에 세우는 묘비의 내용에 의해서 가능하다. 특히, 합장은 부부 이외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묘비에 쓰는 내용도 부부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다.

단분이든 쌍분이든 합장할 때에는 남편과 부인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덤의 앞에서 보았을 때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위치에 대해 예서(禮書)에서는 각각 서쪽이나 오른쪽, 그리고 동쪽이나 왼쪽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위는 무덤이 자리잡고 있는 산줄기와 시신의 머리를 두는 곳을 북쪽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예서에 따르면 부인의 서열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원배(元配)일 때에는 남편의 왼쪽에 합장하지만, 계배(繼配)일 때에는 합장하지 않고 다른 묘혈에 단독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나라의 예에서 보면, 이에 대한 엄격한 관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품자식(品字式)이라고 하여, 남편을 중앙에 매장하고 양 옆에 원배와 계배를 각각 합장하고 있는 형태가 많이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남자의 왼쪽에 나란히 합장하고 있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副室)의 경우는 합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 부인의 지위는 서열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또한 비석이나 신주(神主) 또는 지방(紙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칙과 관행에도 불구하고 묘비에 새기는 부부의 위치는 매장된 것과는

반대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남편의 직함과 성명은 오른쪽에, 부인의 것은 왼쪽에 새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도 남편의 분묘에 부인이 부장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매장된 위치와 묘비에 새겨지는 위치가 정반대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이와 함께 신주나 지방에 쓰이는 위치는 묘비와는 달리 합장의 위치와 같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방위와 위치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상하와 경중의 관념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생사에 따라 정반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된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음양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지상은 양이며, 지하는 음으로 구분하여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지상에 살고 있을 때는 동쪽과 왼쪽을 윗자리와 무거운 방위로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서, 지하에 묻힐 때는 오히려 서쪽과 오른쪽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매장의 위치, 묘비의 내용 그리고 신주와 지방에 쓰이는 위치가 서로 다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나라 사람의 방위관념이나 생사관념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 제기된다고 하겠다.

묘역(墓域)은 사성(莎城)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쌍분이라도 하나의 사성 안에 있을 때라야 합장한 부부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분묘 앞에 계절(階節)이나 배계절(拜階節)을 같이할 때, 또는 상석(床石)을 같이할 때에도 합장으로 본다.

이러한 합장은 현재까지 알려진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3. 참고문헌

『가례(家禮)』

『사례편람(四禮便覽)』

『안동김씨분묘발굴조사보고서』(온양민속박물관, 1989)

『무령왕릉』(문화재관리국, 1973)